

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·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7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7. 19

다. 상정일자 : 2002. 7. 19

(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종합민원과장 배 상 국

나. 개정사유

-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 제11조제2항과 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이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변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(안 제11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와 유사한 순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일부규정이 대법원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있어,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고사 하는 것임.
-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, 공고 등을 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사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
개정조례안

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설치·운영)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7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수당 등)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의설치·운영)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외부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여비,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정보공개심의회의설치·운영)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p>
<p>제16조(화순군 심의회) ① 위원은 위촉직위원 5명(외부 전문가3명,군의원2명)과 당연직 위원(총무과장, 종합민원처리과장)2명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③ 화순군심의회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(수당 등) ①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